

박형준 / 3월 / 기초GS+ / 5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15947	24	15	0	0	39	1	0.76%	5	132
515486	22	15	0	0	37	2	1.52%	4	
515529	21	15	0	0	36	3	2.27%	6	
515662	22	14	0	0	36	3	2.27%	5	
515462	22	13	0	0	35	5	3.79%	5	
515335	22	12	0	0	34	6	4.55%	5	
515429	20	14	0	0	34	6	4.55%	6	
515492	21	13	0	0	34	6	4.55%	5	
515531	19	15	0	0	34	6	4.55%	4	
516043	21	13	0	0	34	6	4.55%	5	
515366	19	14	0	0	33	11	8.33%	5	
515421	20	13	0	0	33	11	8.33%	5	
515461	19	14	0	0	33	11	8.33%	5	
515510	19	14	0	0	33	11	8.33%	5	
515523	21	12	0	0	33	11	8.33%	5	
515524	17	16	0	0	33	11	8.33%	6	
515549	17	16	0	0	33	11	8.33%	5	
515567	20	13	0	0	33	11	8.33%	5	
516005	20	13	0	0	33	11	8.33%	4	
516047	19	14	0	0	33	11	8.33%	5	
514114	19	13	0	0	32	21	15.91%	5	
514398	19	13	0	0	32	21	15.91%	3	
515379	19	13	0	0	32	21	15.91%	5	
515456	22	10	0	0	32	21	15.91%	5	
515457	20	12	0	0	32	21	15.91%	5	
515514	20	12	0	0	32	21	15.91%	4	
515516	19	13	0	0	32	21	15.91%	5	
515546	19	13	0	0	32	21	15.91%	5	
515984	23	9	0	0	32	21	15.91%	6	
516079	20	12	0	0	32	21	15.91%	5	
516270	19	13	0	0	32	21	15.91%	5	
515545	19	13	0	0	32	21	15.91%	5	
515382	20	11	0	0	31	33	25.00%	5	
515437	19	12	0	0	31	33	25.00%	5	
515446	19	12	0	0	31	33	25.00%	5	
515489	20	11	0	0	31	33	25.00%	5	
515513	20	11	0	0	31	33	25.00%	6	
515659	22	9	0	0	31	33	25.00%	5	
515731	20	11	0	0	31	33	25.00%	4	
516082	18	13	0	0	31	33	25.00%	5	
515347	19	11	0	0	30	41	31.06%	5	
515439	18	12	0	0	30	41	31.06%	5	
515444	19	11	0	0	30	41	31.06%	5	
515470	18	12	0	0	30	41	31.06%	5	
515481	19	11	0	0	30	41	31.06%	5	
515491	22	8	0	0	30	41	31.06%	5	
515535	17	13	0	0	30	41	31.06%	5	
515569	21	9	0	0	30	41	31.06%	5	
515657	19	11	0	0	30	41	31.06%	5	
515726	18	12	0	0	30	41	31.06%	5	
515739	18	12	0	0	30	41	31.06%	4	
516077	21	9	0	0	30	41	31.06%	4	
514475	21	8	0	0	29	53	40.15%	5	
514532	20	9	0	0	29	53	40.15%	4	
515354	17	12	0	0	29	53	40.15%	5	
515370	18	11	0	0	29	53	40.15%	4	
515393	21	8	0	0	29	53	40.15%	5	
515398	19	10	0	0	29	53	40.15%	4	
515447	18	11	0	0	29	53	40.15%	5	
515450	17	12	0	0	29	53	40.15%	5	

515459	20	9	0	0	29	53	40.15%	4
515475	19	10	0	0	29	53	40.15%	4
515506	19	10	0	0	29	53	40.15%	5
515527	22	7	0	0	29	53	40.15%	5
515568	18	11	0	0	29	53	40.15%	4
515664	19	10	0	0	29	53	40.15%	6
515674	17	12	0	0	29	53	40.15%	5
515369	20	8	0	0	28	68	51.52%	5
515373	19	9	0	0	28	68	51.52%	4
515420	16	12	0	0	28	68	51.52%	5
515480	17	11	0	0	28	68	51.52%	6
515563	19	9	0	0	28	68	51.52%	4
515614	20	8	0	0	28	68	51.52%	5
515685	18	10	0	0	28	68	51.52%	7
515913	18	10	0	0	28	68	51.52%	5
516023	17	11	0	0	28	68	51.52%	5
516046	19	9	0	0	28	68	51.52%	5
515403	20	7	0	0	27	78	59.09%	5
515417	18	9	0	0	27	78	59.09%	5
515423	21	6	0	0	27	78	59.09%	5
515464	17	10	0	0	27	78	59.09%	5
515482	20	7	0	0	27	78	59.09%	5
515487	19	8	0	0	27	78	59.09%	4
515519	17	10	0	0	27	78	59.09%	4
515641	19	8	0	0	27	78	59.09%	5
516103	19	8	0	0	27	78	59.09%	5
514504	17	9	0	0	26	87	65.91%	4
515409	21	5	0	0	26	87	65.91%	5
515490	22	4	0	0	26	87	65.91%	4
515539	21	5	0	0	26	87	65.91%	4
515564	21	5	0	0	26	87	65.91%	5
515650	19	7	0	0	26	87	65.91%	4
515658	21	5	0	0	26	87	65.91%	6
515844	21	5	0	0	26	87	65.91%	5
515440	16	9	0	0	25	95	71.97%	5
515479	16	9	0	0	25	95	71.97%	4
515572	14	11	0	0	25	95	71.97%	4
515643	17	8	0	0	25	95	71.97%	5
516105	15	10	0	0	25	95	71.97%	5
515355	21	3	0	0	24	100	75.76%	4
515497	18	6	0	0	24	100	75.76%	5
515512	18	6	0	0	24	100	75.76%	5
515548	18	6	0	0	24	100	75.76%	5
516035	19	5	0	0	24	100	75.76%	5
516904	18	6	0	0	24	100	75.76%	5
515468	18	5	0	0	23	106	80.30%	5
515517	20	3	0	0	23	106	80.30%	5
515554	17	6	0	0	23	106	80.30%	5
515670	14	9	0	0	23	106	80.30%	4
515738	12	11	0	0	23	106	80.30%	5
515740	19	4	0	0	23	106	80.30%	5
515997	18	5	0	0	23	106	80.30%	5
516125	19	4	0	0	23	106	80.30%	5
515378	18	4	0	0	22	114	86.36%	5
515392	18	4	0	0	22	114	86.36%	4
515483	18	4	0	0	22	114	86.36%	4
515672	18	4	0	0	22	114	86.36%	4
516051	19	3	0	0	22	114	86.36%	4
515679	16	5	0	0	21	119	90.15%	5
515734	18	3	0	0	21	119	90.15%	5
515381	20	0	0	0	20	121	91.67%	5
515466	20	0	0	0	20	121	91.67%	4
516030	20	0	0	0	20	121	91.67%	5

515504	19	0	0	0	19	124	93.94%	6
515846	14	5	0	0	19	124	93.94%	5
515990	19	0	0	0	19	124	93.94%	5
516106	19	0	0	0	19	124	93.94%	5
515385	18	0	0	0	18	128	96.97%	4
515472	18	0	0	0	18	128	96.97%	4
515579	18	0	0	0	18	128	96.97%	5
515458	7	10	0	0	17	131	99.24%	5
515509	14	0	0	0	14	132	100.00%	6
514984	0	0	0	0	0	133	100.76%	#DIV/0!
515357	0	0	0	0	0	133	100.76%	#DIV/0!
515448	0	0	0	0	0	133	100.76%	#DIV/0!
515640	0	0	0	0	0	133	100.76%	#DIV/0!
515733	0	0	0	0	0	133	100.76%	#DIV/0!
516008	0	0	0	0	0	133	100.76%	#DIV/0!

박형준/3월/기초GS Plus/5회/1번	채점자
	김시연

1. 전반적인 총평

명세서 기재요건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묻는바가 명확하여 다들 분량에 맞춰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다들 잘 써 주셨다 보니 상대적으로 분량을 더 많이 써주신 분에게 추가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1에서 배점 분량 이상으로 많이 기재하시느라 문제 2를 날리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배점에 맞게 적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끝까지 다 적어주시는 것이 득점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GS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설문 3, 4의 경우 괄호 안에 명세서의 기재상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론에 이에 대한 사안의 해결을 적어주신 분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용이 실시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 및 판례 써주시고, 물건발명에 대하여 특수한 판례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실험 자료라는 키워드 때문인지 화학발명에 관한 판례를 적어주신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물건발명에 대하여 실험 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기재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2) 설문 2

배경기술에 기재된 사항을 공지기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종래 판례와 비교하여 제시해 주신 답안에 높은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바뀌기 전 종래 판례와 비교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설문 3

뒷받침요건에 대한 이해를 묻는 설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답을 틀리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사안처럼 동일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뒷받침요건의 위반은 아니고 다만 42조 3항 1호가 문제될 수는 있다는 점을 기재해 주신 분에게 높은 점수 드렸습니다.

(4) 설문 4

명확성요건에 대한 판례와 설문에서 물어보는 '바람직하게는' 사건에 대한 판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설문 또한, 괄호 안에 적힌 사정을 바탕으로 사안의 해결을 적어주신 분에게 높은 점수 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 제시되는 경우, 단순히 판례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사안의 해결을 통한 결론 부분은 꼭 작성해 주세요.

3. 소결

명세서 기재요건은 쉽게 생각하고 대충 공부하면 놓칠 수 있는 중요 법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문제에 제시된 논점들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비해주세요!

박형준/3월/기초GS Plus/5회/2번	채점자
	김시연

1. 전반적인 총평

청구항 기재불비에 관한 20점짜리 통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0점 배점 분량을 다 채워주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해주세요.

채점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관련 법리를 한 번에 나열하고 이후 청구항 별로 각각 어떤 기재불비가 있는지 적어주는 것이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또한, 소목차로 내려가실 때는 살짝 씩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① 청구항 1, 6, 7처럼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하자 없음'을 언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다중 인용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청구항 4는 애초에 청구항 3만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청구항 3이 2이상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중 인용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설문에 나타난 기재불비 예시와, 변리사 기출 문제에 나왔던 기재불비 예시들은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목차의 구성이나 가독성보다도 최대한 많은 기재불비를 찾은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별 기재불비를 찾는 대신 기재불비 요건들을 나열해 주신 분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웠습니다.

3. 소결

기재불비는 자칫하면 다른 논점들에 비해 비교적 덜 중요하다 생각되어 놓칠 수 있는 논점입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최대한 꼼꼼하게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20점 분량을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분량을 채우려고 앞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적어주시는 바람에 정작 청구항 별 기재불비 내역은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시험에서는 시간 분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다 잘 보여줄 수 있을지에 신경 써 주세요.

< 문제 - 1 >

I. 선택 (1)

1. 용이성시험의 의미. 취지 (본 사건 주장 문)

특정 공해의 다가인바, ~~방정~~ 방정 시험은 황의 기동성이
특히 심한 수 입은 정교 명료한 형태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용이성시험 판정기준 - 취지

취지에 따르면, 황의 기동성이 ~~특정~~ 특정 기동성이
보다 ~~과한~~ 과한 수 입은 ~~특정~~ 특정 수 입은 ~~특정~~ 특정 수 입은
수 입은 명백히 기재하여 해당 방정 시험을 성립하게
아닌지 황에 기재한 수 입은 ~~과한~~ 과한지 한다.

3. 용이성시험의 경우 구체적인 판정기준 - 취지

(1) 황의 수 입은 판정

용이성시험의 수 입은 판정 기준의 ~~생략~~ 생략·사용하는
황의 수 입은 판정 기준, 황의 기동성이 특정 황의
기동성을 보다 ~~과한~~ 과한 수 입은
특정 수 입은 ~~특정~~ 특정 수 입은 판정 기준
생략·사용할 수 있다 한다.

(2) 황의 수 입은 판정

구체적인 수 입은 판정 기준이 ~~없어~~ 없거나 특정
황의 수 입은 판정 기준이 황의 기동성이 방정
시험의 수 입은 판정 기준이 ~~없어~~ 없거나



전항 특허에 불응하는 경우 따르면, 명세서 기재
위치에만 의하여 공제특허로 간주되는 것은 발명자
신체에 발하는 결과를 출원한 것이다.

(4) 검토

특수인의 배정특허 ^{기재} 하여 발명 및 심사절차를
위하여 전항 특허가 취소된다.

3. 각종원인 기재된 배정특허의 경우

(1) 특허

과거 특허는 공제특허의 경우 인정하되, 현재
특허는 공제특허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2) 검토

전항 특허의 특수로 보아 현재 특허가 취소된다.

4. 특허의 효과

당초출원, 특허를 특수 배정특허 기재 발명은
공제특허의 기재를 기재 유 무 있다.

IV. 특수 (1)

1. 특수의 의미. 특수 (특수 4항 2)

특수 특수의 특수나, 특수는 특수의 특수
의미 특수이다 특수.

2. 특수의 특수 - 특수

(1) 특수 특수



청구항목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항목의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지 같다.

2) 해당 모든 청구항목에 대한 대책
항목의 항목에 기재된 ~~특~~ 내용을 청구항목에
기재된 항목의 범위에서 ~~필수~~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3. 청구의 일항의 의미 및 관련항목 이해할 수 없는 경우

1) 부재
특허의 청구항목에 기재된 청구항목의 의미 및
관련항목의 관련항목의 판결판에 대하여
판결하는 데에, 청구항목에 기재된 항목의
의 항의 의미나 항목의 항목에 포함하는 기재
의 미 포함 관련항목은 포함한다.

2) 검토
청구항목에 기재된 항목의 일 항의 의미 및
관련항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의
항목에 기재된 항목의 관련항목의 의미나, ~~특~~ ~~항목~~에
대항한다.

4. 청구의 범위
청구항목에 기재된 항목의 일 항과 대응되는
항목의 항목의 항목에 포함하는 기재항목에
관련항목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IV. 문제 (4)

1. 명확성의 의미. 판례 (특허법 제 101조)

청구범위의 명확성, 특허의 효력을 미치는 때
청구범위는 명확한 지적재산이어야 한다.

2. 명확성의 판단 기준 - 특허법

(1) 청구범위 기준 (원칙)

청구범위에서 명확한 기재가 (행동태도, 청구항의
본질의 관을 분명하게 하는 용어 사용으로
충족할 수 있다.

(2) 본질의 범위 파악

특허의 기재상 본질의 범위를 판정할 때 등 및
주요한 것의 기재사항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써 본질을 파악하는 본질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기재사항은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항의 기재된 용어를 인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3. 본질의 개념

(1) 본질적 개념은 특허법

특허법상의 관이 행위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의미상에서 본질적 양의 청구항을 본질적
본질의 본질적 양이며 본질적 양이 다른 다른
본질적 양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명확성 판 위반이다.

(2) 4차

1) 청구항에 상응하거나 하위개념인 '바라볼 수 있는' 의 의미로서 알리는 것이 통상을 보는 청구항의 명백성 요건은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위와 명백하게 파악할 수 없고, 주 관공시에서 명백하게 해석할 수 없다면 명백성 요건 위반이다.

(중)

< 문제 2 >

I. 특허 출원

(1) 특발성 요건 (특 4조 4항 1호)

특발성 요건의 대상인 바,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특발성론이어야 한다.

(2) 비확정 요건 (특 4조 4항 2호)

청구항의 범위와, 청구의 목적을 파악할 때 청구항을 명백하고 간명하게 식어야 한다.

(3) 다양성 요건 (특 4조 4항 3호 및 4항 4호)

비확정성을 위해, 여러 청구항은 다양성에 있어 위법한 경우를 말한다.

(4) 단일성 (특 4조 4항 5호)



상대방의 ~~특개~~ 10년형 (특정기간을 유상으로 할라

2. ~~특개~~ ~~특개~~ 판관

(1) ~~특개~~ 1

상대방의 특정시 대응하는 기대가 있고, 기타 특개로
판관으로 ~~특개~~ 판관이다.

(2) ~~특개~~ 2.

1) ~~특개~~ 판관 위반

상대방의 특정시 대응하는 기대가 있고, 기타 특개로
판관으로 판관으로 ~~특개~~ 판관 위반이다.

2) ~~특개~~ 판관 위반

상대방의 특정시 대응하는 기대가 있고, 기타 특개로
판관으로 판관으로 ~~특개~~ 판관 위반이다.

(3) ~~특개~~ 3

1) ~~특개~~ 판관 위반

상대방의 특정시 대응하는 기대가 있고, 기타 특개로
판관으로 판관으로 ~~특개~~ 판관 위반이다.

2) ~~특개~~ 판관 위반

상대방의 특정시 대응하는 기대가 있고, 기타 특개로
판관으로 판관으로 ~~특개~~ 판관 위반이다.

3) ~~특개~~ 판관 위반

상대방의 특정시 대응하는 기대가 있고, 기타 특개로
판관으로 판관으로 ~~특개~~ 판관 위반이다.



'아동에게서 발견된' 인공물이라 '아름답음' ~~주요~~ 장난감

장난감에 있는 특징적 기하학적 형태를 특징적 장난감

(B) 장난감 관련

특징적 모든 아동 또는 아동에게서 발견된 장난감
발견된다.

15 (B) (B) (B)

발견된, 특징적 장난감!



[문제 - 1]

I. 48(1)

1. 용이성 요건 - 法 42조 3항 1호

(1) 의의·취의

특정한 계의 대가인바, 발명의 내용은 용의 가치에 반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설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관공정 취의

용의 가치가 출원인의 기술력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여하지 않고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용의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 과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

2. 문헌발명의 경우 관공정을 취의

(1) 관공정 취의

① 문헌 발명의 관공정 문헌의 생산, 사용행위를 말해, 용의 가치에 출원인의 기술력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여하지 않고도 문헌의 관공정 기재된 사항에 의해 문헌과 제1항·4항 및 2항의 관공정 취의가 되어 관공정 취의가 되고, ②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용의 가치가 명세서 관공정 취의가 출원인의 기술력으로 보아 용의 가치에 명세서 관공정 취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 조 요건을 충족한다.

3. 사안의 취의

① 발명의 관공정 기재된 발명이 용의 목적을 수행하는 실험과도 같은 경우에도 출원인의 기술력에 용의 가치에 발명의 용의 취의 예측가능성이 용의 목적의 취의가 아니다.

② 그러나 용의 예측가능성이 없다면 용의 목적의 취의가 해당한다.

II. 생원(2)

1. 배정기술 기재요건의 의미 취 (보통 920 9항 2호)

취득의 및 이용으로 등을 위해, 당연히 이해에 의해 되는 것은
기재하여야 한다.

2. 명세서에 기재된 배정기술의 권리

(1) 종래 선행기술

① 명세서에 종래기술 기재시 종래기술의 신기술·진보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② 명세서에 기재된 배정기술은 선행기술은 본문.

(2) 진행 선행기술

① 배정기술은 종래기술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이고, 상대
유용한 기술적 진보가 없다 하면 종래 기술은 선행기술은 본문 기술은
아니다 ② 명세서에 기재된 배정기술은 그 권리를 공격할
불능 없다 한다.

(3) 진행 선행기술 보존

① 유대나 종래 선행기술은 명세서에 종래기술이라 선정되어 기재한
이후 진행의 진보가 없다 하면, ② 종래
기술은 이후 이후 취득 가능한 기술은 본문 기술은 본문
권리에 판단할 것은 각각의 변화 유무를 판.

(4) 경로

배정기술 회피 기술은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의 권리에 의한 변화를 유기
진행 선행기술 기재한다.

3. 경로 - '소'

명세서에 기재된 것으로 기재된 바와 달리 권리자의 귀속을 가진 "29"

II 식별(3)

~~1. 특허권 취득 관련~~

1. 출원권 명의 여부. 권리 (특허권) 4조 3항 1호

특허권 명의의 변경인바, 출원권은 변경의 사항이 여러 명에 있어서야
한다.

2. 표본권을 취득

(1) 행정각 시도

출원권 명의 기재된 대로 통째로 기재된 사항이 기재된
사항이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기재된 사항이 기재된
사항으로 판명한다.

(2) 광복 문제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기재된 사항이 기재된 바와 달리
판명 또는 기재된 바와 달리 기재된 사항이 기재된 바와 달리
판명한다.

(3) 용이식 등의 권리

~~특허권~~ 사항으로 출원권은 특허권은 특허권 4조 3항
1호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판명한다.

3. 사인의 권리

(1) 행정각 시도 검토

출원권은 기재된 바와 달리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판명한다.

3. '비광주해석' 관련 취지

① 청구항의 상위 개념이 '비광주해석' 이라는 용어로 명칭되어
 있는 반면 ② 구별이 상위개념 권리를 의미하며, 하위개념을
 의미하며 명칭이 없이 즉, 본래의 개념이 청구항과 동일한
 비광주해석의 취지 ③ 청구항은 본래의 본래의 취지
 이라는 청구항의 취지 비광주해석의 취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
 되어 명칭을 통해 구분하지 못한다.

4. 상의 경우

① 청구항이 상위개념과 하위 개념이 이중한 용어 '비광주해석'
 으로 명칭되어 있고 ② 본래의 개념이 청구항이 가지는 비광주
 해석의 비광주해석의 취지 ③ 청구항의 구별이 상위개념 권리를
 받으며, 하위개념을 의미하며 명칭이 없이 본래의 본래의
 취지 및 다양한 관용 해석의 취지 있어 명칭을 요건의
 '구별'이 해석한다.

[중]

[문제 - 2]

I. 경우 (1)

1. 관련 법리

(1) ~~법 423 4항 1호~~

① 특허는 특허의 대가 인바, 청구항은 발명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위하는 청구항이 기에 수단이 발명인 수단이 대가의 대용대이다. 발명의 수단이 기재되는 내용은 청구항이 기재된 발명의 범위에 포함. 인정할 수 없게 되면 관련 법리의

(2) ~~법 423 3항 1호~~ 4항 2호

① 청구항의 권리사상 요건은 고안성,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위하는 청구항이 발명의 수단이 발명인 수단이 대가의 대용대이다. 발명의 수단이 기재되는 내용은 청구항이 기재된 발명의 범위에 포함. 인정할 수 없게 되면 관련 법리의

(3) 법 423 8항

상회하는 위해, 여러 청구항의 권리사상 요건 539 항이 인정

(4) 법 53

① 청구항의 대가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5항)

② 대가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6항)

③ 인용항이 발명 기재되어야 한다. (7항)

2. 청구항 1

위치가 보이기 않는다.

3. 청구항 2.



(1) 명칭상 표기 문제

'복합적으로' 라는 분명하고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명칭상 표기 (표준) 상
문제의 기재가 문제이다.

(2) 뒷받침 문제

'복합'은 본문의 설명이 다른 기재 없이 표준 상 (표준) 상
문제의 기재가 문제이다.

4. 청구항 3

(1) 태안장 인용문제

제 1항과 제 2항은 태안장에 인용하고 있어 표준 상 (표준) 상
문제의 문 상 (표준) 상 문제이다.

(2) 인용항 문제

제 2항 항을 인용하고 있어 표준 상 (표준) 상 및 문 상 (표준) 상 문제이다.

(3) 뒷받침 문제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표준 상 (표준) 상'이라는 기재는 본문의 설명이 인용항의
항이 표준 상 (표준) 상 문제이다.

5. 청구항 4 - 뒷받침 표기 문제

'이러한 명칭은 표준 상 (표준) 상'이라는 기재는 본문의 설명이 인용항의
항이 표준 상 (표준) 상 문제이다.

6. 청구항 5

(1) 인용인용 문제

제 2항은 항을 인용하고 항이며, 제 2항 인용항 제 2항 3항
인용항 항이 표준 상 (표준) 상 및 문 상 (표준) 상 문제이다.



